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(일부개정) 2007.04.04 조례 제1672호 (일부개정) 2008.09.01 조례 제1711호 (일부개정) 2014.08.06 조례 제1912호 제명 띄어쓰기 (일부개정) 2019.01.30 조례 제231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·결손·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1.30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.1.30.>

- 1. "저소득주민"이란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(이하 "보험료"라 한다)를 합산한 산정액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.<개정 2019.1.30.>
- 2. "노인세대"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. <개 정 2019.1.30.>
- 3. "장애인세대"란 세대원이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의령군수(이하 "군수 "라 한다)에게 장애 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. <개정 2014.8.6., 2019.1.30.>
- 4. "한부모가족"이란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를 말한다. <개정 2014.8.6., 2019.1.30.>
- 제3조(지원대상) ①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. <개정 2014.8.6.>
 - ②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1.30.>
- 제4조(지원대상자 선정) 제3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.
- **제5조(지원액)**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.30.>
- **제6조(지원시기)**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, 월별 지역보험료 산정에 따른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.
- 제7조(지원방법)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료는 개인별 계좌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수혜자와 합의를 거쳐 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 <개정 2019 1 30 >
- **제8조(조사)**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보험공단의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,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8. 9. 1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규칙 제1912호 2014.8.6.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조례 제2319호 2019.1.30.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